2008. 9. 3
제1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정 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1) 예산총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총 계		354,000	343,300	10,700
일반회계	계	**329,200**	**318,500**	**10,700**
일반회계		329,200	274,000	10,700
특별회계	계	**24,800**	**24,800**	**0**
의료급여기금		304	230	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1,275	925	0
농공지구관리		780	780	0
치수사업		8,306	8,401	0
경영사업		10,340	12,169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3,795	3,795	0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54,000**	**343,300**	**10,700**	**3.12**
일반회계	**계**	**329,200**	**318,500**	**10,700**	**3.36**
	지방세수입	63,781	60,581	3,200	5.28
	세외수입	55,404	53,443	1,960	3.67
	경상적세외수입	12,307	11,397	909	7.98
	임시적세외수입	43,097	42,046	1,051	250
	지방교부세	110,608	109,608	1,000	0.91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3,677	13,677	0	0.00
	보조금	85,728	81,189	4,539	5.59
	국고보조금등	53,093	52,593	499	0.95
	시·도비보조금등	32,635	28,595	4,039	14.13
	지방채등	-	-	-	-
특별회계	**계**	**24,800**	**24,800**	**0**	**0.00**
	세외수입	24,577	24,577	0	0.00
	경상적세외수입	7,170	7,170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7,407	17,407	0	0.00
	보조금	222	222	0	0.00
	국고보조금등	177	177	0	0.00
	시·도비보조금등	44	44	0	0.00

4. 검토의견

■ 예산규모

-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33억원 보다 107억원이 증가된 3,540억원임.

- 이중 일반회계예산이 기정예산액 3,185억원보다 107억원이 증가된 3,2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이 248억원임.

■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10억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주행세 16억원 등 32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9백만원, 전입금 2천 5백만원, 변상금 2천6백만원, 기부금 10억원 등 19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음.

-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계상되었음.

-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4억 9천 9백만원과 시비보조금 40억 4천만원 등 45억 3천 9백만원을 추가계상 하는 등 총 107억원이 계상되었음.

■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인건비**에 있어서는 저수지 제당관리 인부임 1천6백만원,
죽곡택지지구내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 7백만원 등
총 3천 9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 **주요자체사업**으로는 달성군새마을회관 신축 4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있고,
달성장학회 출연금 1억원,
9개 읍면 장학회 출연금 9억원,

가창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5억 4천 3백만원,
다사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8억 2천만원,
하빈 무등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 1억 2천만원,
유가 휴양림 입구의 선형개량사업에 6억 1천 5백만원,
현풍 자모양수장 용수관로 정비사업 3억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 사업비 8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화원-옥포 간 우회도로건설사업에 2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음.

한편 국가산업단지 지정예정지 내의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3천 6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교육청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평생학습관 공동지원사업비 2천 5백만원,

달성문화원 개별냉난방기 설치사업 2천 5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2천만원,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 1억원 등

총 58억 3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금호강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40억원,
결핵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6천 6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7천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3억 3천 1백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2천 1백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억 2천 5백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9백만원 등

총 50억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기타사항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 재원으로 당면한 현안 사업추진에
부족사업비(가창체육공원 등)를 계상하였고,

국가정책에 따라 일부 관련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72회 임시회>

2008. 9. 3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동 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8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

3. 개정 이유

○ 다사읍 서재, 죽곡, 매곡리에 「신성서화성파크드림A」 「서재진흥더블파크A」 「대실역e-편한세상」 「죽곡하우젠트아너스빌A」가 준공되어 많은 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기존 자연부락과 신설아파트 주민간의 생활양식과 정서 차이로 인한 주민화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 특히 상기 신설 아파트들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내의 각종현안사항과 행사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화합을 위해 행정구역과 이장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은

○ 다사읍 서재 1리를 서재 1리와 8리로, 서재 2리는 2리와 9리로, 죽곡 1리를 죽곡 1리와 6리로, 매곡 2리는 매곡 2리와 10리로 분리하고

○ 다사읍 서재리 이장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죽곡리 이장 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매곡리 이장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다사읍 서재리, 죽곡리, 매곡리에 총 2,500여 세대가 새롭게 준공·입주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리를 분리하여 이장정수를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원활한 주민서비스제공을 위해 적정한 조례안으로 여겨짐.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8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

3. 개정 이유

○ 다사읍 서재, 죽곡, 매곡리에 「신성서화성파크드림A」 「서재진흥더블파크A」 「대실역e-편한세상A」 「죽곡하우젠트아너스빌A」가 준공되고 많은 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행정리의 분리와 함께 행정반을 조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은

리·반 조정 : 4개리 62반 증가

(237개 리 ⇒ 241개 리, 1,579반 ⇒ 1,641반)

기 존		개 정		증감	비 고
행 정 리	반수	행 정 리	반수		
서재 1리	3	서재 1리	6	3	자연부락(다세대주택 신축)
		서재 8리	**12**	**12**	**신성서화성파크드림아파트**
서재 2리	6	서재 2리	6	0	자연부락
		서재 9리	**16**	**16**	**서재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죽곡 1리	6	죽곡 1리	4	▽2	자연부락
		죽곡 6리	**17**	**17**	**대실역 e-편한세상아파트**
매곡 2리	6	매곡 2리	6	0	자연부락
		매곡10리	**16**	**16**	**죽곡하우젠트아너스빌아파트**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다사읍 서재리, 죽곡리, 매곡리에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준공 · 입주하게 됨에 따라 기존 행정리와 신설되는 행정리의 행정반을 조정·신설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8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주민생활지원과)

3. 제정 이유

국가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노후 생활에 다소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4. 주요내용은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

나.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달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이 조례에서 적용되지 않은 사람의 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등)
- 보훈관련 법률에 의거 참전명예 수당 외 다른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

라.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

○ 참전명예수당은 매분기의 다음날 20일 이내 지급

○ 사망위로금은 유족 및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5.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참전자들의 공로에 보답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으나마 경제적 보탬을 주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9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참전유공자가 國家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禮遇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名譽를 宣揚하고 國民의 愛國精神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6>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戰爭"이라 함은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戰鬪 및 1948年 8月 15日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戰鬪중 別表의 戰鬪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戰爭에 參戰하고 轉役(退役 또는 免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軍人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現役服務중 1964年 7月 18日부터 1973年 3月 23日까지 사이에 越南戰爭에 參戰하고 轉役된 軍人

다. 6·25戰爭에 參戰하고 退職한 警察公務員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越南戰爭에 參戰한 사실이 있다고 國防部長官이 인정한 者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第3條 (적용대상 <개정 2002.1.26>)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신설 2002.1.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1.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禁錮 1年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3. 상습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者
③國家報勳處長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다시 받아 登錄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1.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
2. 第1號외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年이 경과한 때
④國家報勳處長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機關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第4條 (國家등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참전유공자의 禮遇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名譽를 宣揚하기 위한 事業
2. 참전유공자의 護國精神을 承繼하기 위한 事業
3. 참전유공자의 福利를 증진하기 위한 事業
4. 6·25戰爭 參戰國과의 友好增進을 위한 事業

第5條 (登錄 및 결정)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登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6, 2007.1.3>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國家有功者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1.3>

제5조의2 (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7.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02.1.26]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

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6]

第7條 (醫療支援) ①참전유공자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醫療施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診療를 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診療費를 減免한다. <개정 2002.1.26, 2007.1.3>
②國家는 참전유공자의 診療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醫療施設외의 醫療施設에 委託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診療費를 減免한다. <개정 2002.1.26>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費 減免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第8條 (養老保護) ①65歲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養老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老保護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養老施設외의 養老施設에 委託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第9條 (묘지에의 안장 <개정 2002.1.26, 2005.7.29>)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

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遺骨을 묘지에 安葬 또는 安置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7.29>
③묘지에 安葬 또는 安置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의하여 合葬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7.29>
④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葬 또는 安置를 위하여 墓地를 직접 造成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하여 造成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가 死亡한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安葬 또는 安置하는 경우에는 葬祭補助費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5.7.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3.31, 2007.1.3>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遺骨의 安葬 또는 安置對象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第10條 (古宮등의 利用支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管理하는 古宮·公園등의 施設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第11條 (權利의 發生時期)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참전유공자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權利는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2.1.26>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7.1.3>[전문개정 2001.12.31]

제12조의2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5.29]

第13條 삭제 <2001.12.31>
第14條 삭제 <2001.12.31>
第15條 삭제 <2001.12.31>
第16條 삭제 <2001.12.31>

제17조 (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3]

附則 <제6258호,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參戰軍人등이 參戰勇士記錄表를 제출한 경우에는 第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보는 參戰軍人등의 이 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權利는 第11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발생한다.

第3條 (參戰軍人등지원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參戰軍人등 지원基金의 債權·債務 등 모든 權利·義務는 參戰紀念事業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除隊軍人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중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參戰軍人 및 大韓民國"을 "大韓民國"으로 한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해당하는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보훈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보훈기금법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⑤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649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된 참전군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군인등중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계지원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생계보조비에서 참전명예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지급받던 무공영예수당과 생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무공영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부칙 <제6922호,2003.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5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國立墓地 등에의 安葬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國立墓地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國立墓地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73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8230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079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8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청소위생과)

3. 개정 이유

○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등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달성군식품진흥기금 계좌로 수납·관리하고자 함.

○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직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조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은

가. 기금의 조성재원 추가(안 제2조)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조성재원 추가함.

나.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위원 변경(안 제4조)

○ 식품진흥기금 위원구성을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변경하고 군의회의원을 추가하고,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

다. 기금운용관 변경(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근거하여(행정안전부예규 제201호)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

라. 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근거하여 심의 내용 중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함.

5.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 71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등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직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식품위생법>

第71條 (食品振興基金) ①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市·道 및 市·郡·區에 食品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5.12.29, 2000.1.12>

②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1988.12.31, 2002.8.26>

1. 食品衛生團體의 出捐金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
3.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③基金은 다음의 事業에 사용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29, 2000.1.12, 2002.8.26, 2005.1.27, 2006.12.28>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融資事業
2. 食品衛生에 관한 敎育·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調査·硏究事業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食品衛生敎育·硏究機關의 육성 및 지원
6. 飮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8.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④基金은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이 管理·運用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2000.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8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청소위생과)

3. 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자 실시되던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면서 환경부에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자 하며,

○ 대형폐기물배출자가 재이용 등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해 주도록 하는 환불규정을 신설함.

4. 주요내용은

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의 삭제

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마련(안 제15조의 2)

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환불규정 신설(안 제22조)

5.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폐기물관리로 우리군의 깨끗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우리군의 조례를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8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청소위생과)

3. 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 환경부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동 조례에 추가하였으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조례로 명시함.

4. 주요내용은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 건설폐기물 관련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5.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환경부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동 조례에 추가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제6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8>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
5.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7.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